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46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이연희 · 문진석 · 김정호  
박상혁 · 박수현 · 맹성규  
한민수 · 허종식 · 이강일  
복기왕 · 이정문 · 이광희  
임미애 · 안태준 · 최혁진  
송기현 · 이해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상속 또는 증여는 제외한다)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제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br>세액감면) ① ~ ⑨ (생 략)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br>세액감면) ① ~ ⑨ (현행과 같<br>음)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br>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br>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br>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⑩ -----<br>-----<br>-----<br>-----.                                                                                                    |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br>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br>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br>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br>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br>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br>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br>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br>-----<br>-----<br>-----<br>-----.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br/>법</u> 」 제3조제1항제2호의<br><u>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u><br><u>을 양수(상속 또는 증여는</u><br><u>제외한다)하여 종전의 사</u><br><u>업을 승계하는 경우</u>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
|-------------|----------------|
| ⑪ ~ ⑬ (생 략) | ⑪ ~ ⑬ (현행과 같음) |
|-------------|----------------|